

-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
-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월

더 커진 연금저축 · 개인형 IRP의 연말정산 혜택

2022.12.31.까지				2023.1.1.부터		
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• 연금저축 + 퇴직연금			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• 연금저축 + 퇴직연금		
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연금저축 납입한도)		세액 공제율	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연금저축 납입한도)	세액 공제율
	50세 미만	50세 이상				
5,500만원 이하 (4,000만원)	700만원	900만원*	15%	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	900만원 (600만원)	15%
1.2억원 이하 (1억원)	(400만원)	(600만원)				
1.2억원 초과 (1억원)	700만원 (300만원)			12%	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	
■ 연금계좌 납입한도 • 연금저축 + 퇴직연금 : 연간 1,800만원				■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• (좌 등)		

화

운용수익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율

연금수령시기	연금소득세율	종신연금 수령시
55세 이상 70세 미만	5.5%	4.4%
70세 이상 80세 미만	4.4%	
80세 이상	3.3%	3.3%



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가액

-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
 -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가액
 - 2017. 1. 1.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계산
- 부수토지의 범위
 -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
 -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를 말함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: 다음에 따른 배율
 -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지역 ·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: 3배
 -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: 5배
 - 수도권 밖의 토지 : 5배
 - 그 밖의 토지 : 10배



금융권 고금리 적금상품

금융기관	적금	최고금리(%)	납입한도	만기	우대조건
광주은행	행운적금	13.2	50만원	12개월	추첨
신한은행	신한 럭키드로우	12	30만원	6개월	-
웰컴저축은행	웰빙워킹적금	10	20만원	12개월	걸음수 달성
서울 관악신협	특판적금	10	제한없음	12개월	없음
서울 남서울신협	유니온적금	7.5	제한없음	12개월	없음